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최근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운영,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화에 따라, 일감뿐만 아닌 위험까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수급업체(하청)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 사업주 모두에게 작업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수급업체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도급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활동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하는 도급인이 수급업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 매뉴얼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과 관련법규를 설명하고, 도급인(원청)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하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수급업체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 6.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CONTENTS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I. 매뉴얼 개요	4
1. 발간배경 및 목적	4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요?	6
3.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어떤 것이 있나요?	7
II.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9
1. 도급사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는?	9
2. 원·하청 간 유기적인 안전보건관리 방법은?	10
3. 도급사업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안전보건법규는?	15
III.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6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16
2.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17
3. 선정기준 및 환류 등	19
IV.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21
(붙임)	
1.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24
2. 원·하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규	31
3. 건설업종 특이사항	46



I

매뉴얼 개요

1 발간배경 및 목적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

-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 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됨

발간배경

- 도급인(원청)의 유해·위험작업을 수급(하청)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작업 시, 안전보건 관리능력이 부족한 수급업체 노동자의 사망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원청 및 하청업체의 재해비교〉

(단위:명)

구 분		노동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사고사망 만인율(‰)
원청업체		456,266	1,158	0.25	6	0.13
하청업체	상 주	181,885	397	0.22	13	0.71
	비상주	411,206	38	0.01	3	—

※ '17년도 연구용역 결과자료(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 상시노동자 1,0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궤도 및 석도운수업의 원청업체 104개소 및 해당 하청업체 14,968개소

- 특히, 수급(하청)업체의 사고사망자가 원청(도급인)의 사고사망자보다 월등히 높아 ‘위험의 외주화’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도급사업에서 원청과 상주 하청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차이는 0.58%p로 상주 하청업체가 5배 이상 높음
- 따라서, 수급업체 노동자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발간목적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에서 도급인 역할의 중요성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주요 구성요소 및 운영사항을 설명하고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수급인 사업주에게 유해·위험정보 사전제공, 위험성평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 안전보건 조치, 교육 지원 등 원·하청 간 일련의 안전보건 활동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와 도급인의 지도 점검을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의무가 있으나,
 - 도급사업인 경우는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책임을 묻고 있어 도급작업에 적합한 안전관리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②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요?

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과 법적 책임과도 관련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사전방지

- 수급인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도급인에게도 생산활동 차질,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유·무형의 손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 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는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격차해소의 사회적 책임 실천

- 수급인 사업장은 도급인 사업장에 비하여 위험성이 큰 작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 사업규모의 영세함으로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미흡하고,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
-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은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임

③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급인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도급인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장에서 증류탑 외면 작업을 위하여 상부에 올라가 이동 중 떨어져 1명 사망



폐목재 선별공정에서 가동 중인 컨베이어 하부에서 청소 작업 중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임으로 1명 사망

유해·위험정보 사전에 미제공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정보를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아 수급인의 위험예측과 사전 대응이 곤란



하수처리시설 내 소화조 이송배관 부분교체 작업 중 소화조에서 인화성가스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 사용으로 폭발하여 2명 사망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고체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갔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으로 2명 사망

혼재 작업 시 도급인의 안전관리 소홀

소속이 다른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업체의 안전조치에 대한 도급인의 조정 및 관리 소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조선소의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크레인이 부딪혀 지브형크레인의 메인지브가 낙하하여 6명 사망 25명 부상



건물지하 설비공사현장에서 다수 하청 업체에서 동시 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로 8명 사망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계약 관행

원가절감, 공기단축을 우선하는 계약으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없이 작업 진행



건조중인 선박의 탱크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환기 불충분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화재·폭발하여 4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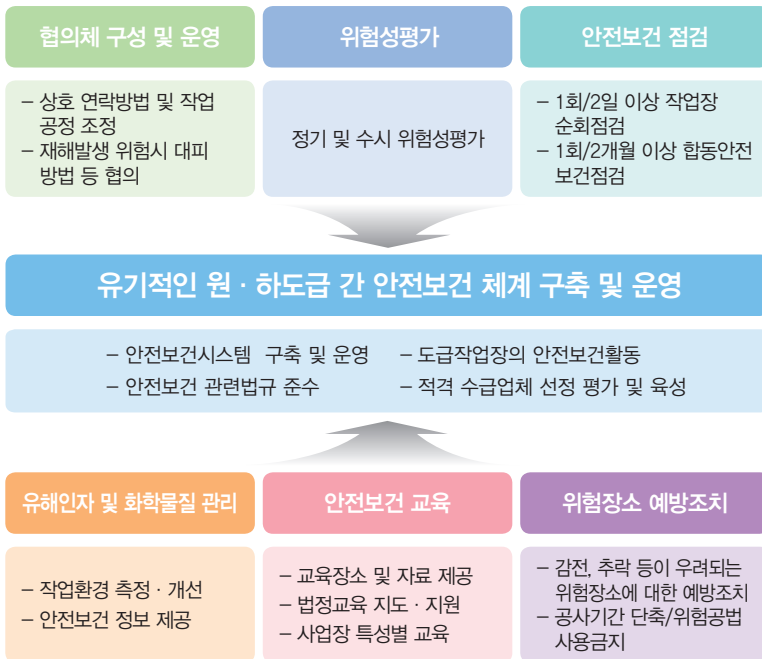
냉각탑 내부의 내장재(충전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냉각탑 내부로 유입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4명 사망

II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① 도급사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는?

-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산재 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② 원·하청 간 유기적인 안전보건관리 방법은?

원·하청업체 간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작업에서 상호 안전보건 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활동이 필요함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① 안전보건 방침 명확화

- 최고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하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② 안전보건 목표 및 활동계획 수립

-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 규모, 전년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 설정
 -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여 전 구성원에 공표
 - 사업장 전체 목표, 부서별 세부목표, 이를 추진하는 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실행
 - 해당업무(작업), 단위별(팀별, 부·과별)로 수립
 - 수단·방법·일정·예산·인원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
 - * 안전시설개선, 교육훈련, 보호구 구입,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추진계획 항목별로 책정

③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원의 직무 및 책임과 권한 설정

- 도급사업의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책임·권한)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조직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④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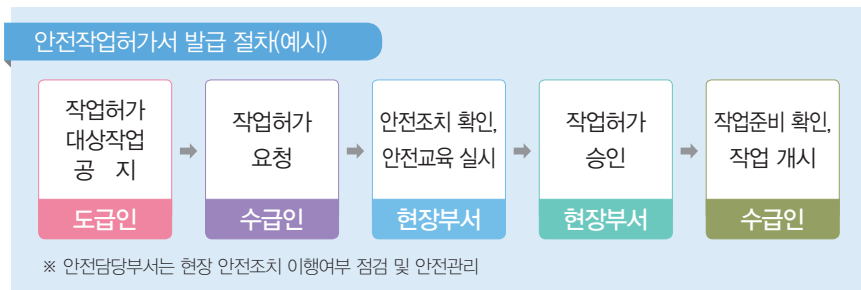
-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여부 및 활동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
- 안전보건 관련법규,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모니터링 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파악과 시정조치 절차 시행

⑤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자는 업무수행능력에 필요한 교육, 훈련, 경험 등 적격한 능력을 보유·유지
- 비상시 대응절차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교육 실시, 체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⑥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 운영
 - 유해·위험한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에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받음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 유해·위험물질이 차있거나 차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용접·절단 또는 스파크나 다른 점화원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밀폐 공간 출입 시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굴착 작업 시
- 전기 작업 시
- 고소 작업 시
- 중장비 작업 시
- 방사능 사용 작업 시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대상은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인이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 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③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 운영
- 법정검사 수검 및 방호조치 구비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제공

④ 작업 시작전 안전점검 및 조치

- 도급작업 공정별로 작업전·중·후 안전점검 실시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필수항목의 누락됨이 없도록 점검
 - 안전점검으로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 안전조치 완료 전 작업중지 등의 관리방안 구비

⑤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확인

- 작업 재개시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조치 이행자와 완료 확인자가 별도 조직(부서)으로 구성되고, 완료 확인결과에 따라 작업개시 승인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책임자급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관련 작업자에게 주지

⑥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 수리·정비 작업 시 Lock-out/Tag-out 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간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체계 구비
 - 유·무선연락망, FAX, 온라인시스템 등의 소통 채널 운영
-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조정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도급작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폭발, 질식 등의 안전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포함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주기에 따라 훈련 실시
 - 훈련종료 후 성과 평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재검토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과 전문의료기관의 연락체계 포함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도급작업장의 원·하청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 절차서 구비
- 도급작업장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 구획
- 안전통로 등 이동경로 준수여부, 필요한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외부인 출입시 위험요인 및 준수사항 안내, 출입허가 필요한 작업구역 설정 및 대외 보호구 구비

③ 도급사업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안전보건법규는?

도급사업에서의 법규사항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원·하청에서는 법적수준 이상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이 필요함

- 도급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요구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 및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안전보건활동으로 이행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규정보를 관보, 법제처, 인터넷 등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원·하청 관련 주요 산업안전보건법규〉

☞ 붙임2 참조

항 목	조 항(산업안전보건법)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제18조
안전보건조정자	제18조의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제20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	제28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협약체 구성·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 작업환경측정 · 위험작업 시 경보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4항 제29조 제5항 제29조 제8항 제29조 제9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제30조
위험성평가	제41조의2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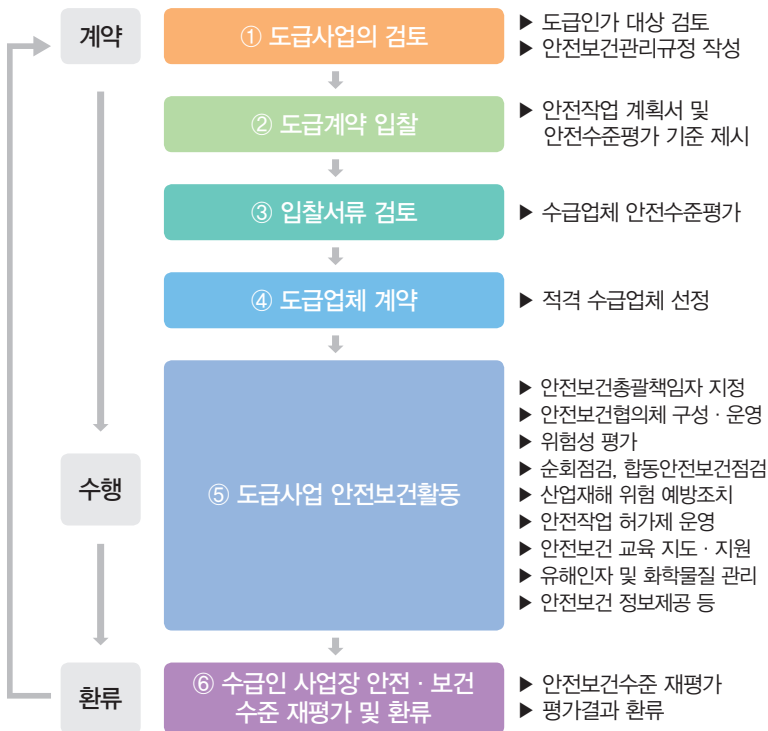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①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입찰공지 시 도급인이 도급사업에서 안전작업계획 및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 수준평가 기준 등을 제시

-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관련 활동상황을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기준제시 ☞ 붙임 참조
 - 도급작업 시 사고사망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약정 ☞ IV 참조

②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안전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고사망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 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붙임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 부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구비
- 도급작업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구조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10), 위험물질 및 설비(5),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③ 선정기준 및 환류 등

평가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나?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4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작업장소 제외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 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사례 안전보건환경관리능력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하청업체별 안전보건환경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 업체는 탈락
 - 평가항목은 안전보건환경영체계/이행성 평가 및 실적평가로 구성 (7개 분야, 23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 부여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수준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원청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IV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안전보건 교육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 점검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②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 정보제공

-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

-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환경

-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현황 제출

- ①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성실히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수준평가 세부기준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2. 계획수립	•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원청 / 하청 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④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3	1

① 우수

-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하청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하청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5	1

① 우수

- 원청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하청의 이행계획에는 원청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원청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구조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청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② 보통: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⑤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하청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원청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작업개시전임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우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작업에서 자체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거나,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확인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배치가 없는 경우 작업종지에 대한 운영방안이 있는 경우

② 보통: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원청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청 · 하청업체 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원청과 하청업체 및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하청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의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원청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⑤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2

원·하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규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 |

'18년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은 도급인에게 조사표를 요청하게 되고
 - － 도급인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도급인은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수급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

〈관련법령 및 대상〉

| 관련 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부터 제3항, 제72조 및 부칙
- － 시행령 제8조의4 제3항 및 부칙
- － 시행규칙 제3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및 부칙

| 대상 사업장 |

- － (업종) 제조업,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표준산업분류 기준)
- － (규모)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18년 시행)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19년 시행)

- (수급인 근로자의 범위)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
 - －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도급 계약 관계 하의 수급인 근로자만 포함
 - ※ 임대계약 형태로 독립 운영되는 은행, 매장, 식당 등의 근로자는 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다수의 근로자가 도급에 의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 사업주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대상)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및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직무)
 - ①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②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③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 ④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 ⑤ 위험성평가의 실시
- (지정방법)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지정

|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2] |

☞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업무 수행

- 발주자는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① 「전기공사업법」제11조에 따른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 (선임방법) 발주자는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 중에서 지정하거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 (업무)
 -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②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③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④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

☞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내용〉

- | | |
|-------------------------------------|---------------------------------|
| 1. 총칙 | 4. 작업장 안전관리 |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5. 작업장 보건관리 |
|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 3. 안전·보건교육 |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

☞ 도급하고자 하는 작업이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인지 확인

-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을 분리 도급 내지 하도급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도급을 줄 때 인가가 필요한 작업

- ① 도급작업
 - ②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 ③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 ④ 그 밖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현재까지는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유해·위험 작업만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있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의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기준〉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안전보건조치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7조(채광 및 조명), 제8조(조도),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 환기장치),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제79조(휴게시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제80조(의자의 비치),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5조(잔재물 등의 처리)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 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제432조(부식의 방지 조치),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경보설비 등),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8조(세척 시설 등),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제453조(설비기준 등),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제461조(용기 등), 제463조(잠금장치 등), 제464조(목욕설비 등),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제468조(기록의 보존),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제471조(설비기준),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폐쇄), 제477조(격리), 제478조(바닥), 제479조(밀폐 등),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483조(작업복 관리), 제484조(보관용기)



Tip

• 도급인가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2. 제출서류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중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 아울러, 중대한 건강상의 장애 또는 중독의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제조 등을 위한 설비의 개보수·분해·해체·철거 작업 사내도급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 중('18년)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18조의2]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 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함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격월로 운영 가능
 -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봄
- (협의체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①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②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③도급인, 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협의체 회의 개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결과를 기록·보존

• (협회사항)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① 작업의 시작 시간
- ②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 방법
- ③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 ④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⑤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Tip

•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특례)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명예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 (점검주기) 1주일에 1회 이상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 수급인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Tip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 필요**

- 수급인이 도급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채용시, 정기,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 도급인은 수급인의 원활한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 등 필요한 사항을 지도 및 지원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건설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함(4시간)
-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시
 - 수급업체가 동참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 지원내용: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사(공사팀장, 안전관리자)와 수급사(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

Tip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도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면제 받게 되며,
 - 교육비용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 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됨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 위험작업 시 경보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도급인은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 · 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 · 경보장치(제299조)
-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 · 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⑥ 금속류, 산 ·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 ⑧ 냉장실 · 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 · 보건 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227항)

1. 토사 · 구축물 ·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 ·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22개)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 나. 특수화학설비 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
10.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1.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시설물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수급인의 단독적인 재해 예방 노력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 내라면 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위험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아울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의무는 일차적으로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또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여야 함



Tip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현행 “22개소”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개정 추진중('18년)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

**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며, 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 참여)

- (점검주기) 분기에 1회이상

– 단,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

☞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 및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행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물질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설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작업	개조·분해 또는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위의 작업을 도급 시에는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함
 - － 해당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 －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일치하는 내용은 MSDS에서 발췌하여 다른 정보와 함께 하나의 문서로 제공해야 함 (MSDS는 참고자료로 별도 제공)
- 도급받은 작업을 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함
-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도급인은 그 수급인(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위 법적 의무사항 이외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절차, 유해·위험성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

☞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하고,
 -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적용대상
 -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격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공사종류	대 상 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Tip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위반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건당 -0.5점, 최대 -1점)

▶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임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까지 위험성 평가를 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 결정 내용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붙임3

건설업종 특이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을 해당 현장에 적합하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급업체에 적정하게 배분
 -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 수급업체 작업관련 보고 및 허가사항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일체가 되어야 하며,
 - 도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수급업체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일일 작업일보, 출력일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유해위험기계기구 반입 허가서, 위험성평가표, 용접작업 등 위험작업허가서, 난방기구 사용허가서, 야간작업 허가서 등

| 수급업체의 시공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의 해당공사 착공 전 시공계획을 반영하여 최초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현장 안전보건 목표와 설정기간에 맞추어 구체적 계획을 검토하여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수립하고 관리
 -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목표의 달성상황, 공정상황, 공법의 변경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

-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안전보건방침 및 핵심 추진과제
 - 안전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 안전보건 교육계획
 - 최초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공정, 공종별 재해예방 대책
 - 안전보건활동 계획(월간 안전보건활동 계획 및 1일 안전 Cycl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포함)
 - 기타 안전보건 관리사항 등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발 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전 화 | (044) 202 - 7723

| 발 행 일 | 2018년 6월

비매품